

## 상 고 취 하 서

사 건 2000다0000 대여금 상 고 인(원고) 000 피상고인(피고) <

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(원고)은 상고인(원고)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취하합니다.

2000. 00. 00.

위 상고인(원고)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대법원 제○부(○) 귀중

			91.KT
제출법원	대 법 원	제출기간	상고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 <b>월</b>
			지(민사소송법 제393조, 제425. 🖠 🔼
제출부수	취하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	· 상고취하로 인해 상고는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고 상고심절차는		
기 타	종결됨. 원판결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소의 취하와 달리 상고의		
	취하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에 의해 원판결은 확정		
	됨.		
	· 상고인 자신이 상고취하서에 그 인장을 날인하여 소외인에게 교부		
	하였다면 위 상고취하서가 그 제출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		
	이루어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상고		
	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(대법원 1970. 10.		
	23. 선고 69다2046 판결).		
	·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		
	법상의 소송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, 소송행위에 조건을 붙일		
	수 없고, 상고를 취하하는 소송행위가 정당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		
	어진 이상 기망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, 적법하게 제출된		
	상고취하의 서면을 임	]의로 철회할	수도 없음(대법원 2007. 6. 15. 선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상소 및 재심 >> 상소

고 2007다2848 판결).